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미주통상과 김정회 과장(2110-5381), 김장희 서기관(2110-5384)

美 무역대표부, 201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

□ 美 무역대표부(USTR)는 '13.4.1(미국시간) 2013년 "국별 무역장벽", "위생검역" 및 "기술장벽"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

* USTR은 1974년 통상법(Trade Act)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(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)를 작성,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

– 2010년부터 SPS(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, 동식물 위생 및 검역) 및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)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

□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·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 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

○ (NTE 보고서) 미국의 61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

- 농산물, 자동차 등의 관세인하, 의약품·금융·법률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명성 강화 등 한·미 FTA 발효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로 명시

○ (SPS 보고서) 미국의 48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

- 우리나라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2012년 보고서와 유사하게 쇠고기 시장개방,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(Maximum Residue Limits), 체리 수출 등에 대한 미측 입장을 기술

○ (TBT 보고서) 18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

-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·미 FTA에 따른 TBT 위원회 등에서 진전 사항이 있었음을 평가하고, 화장품 라벨링,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, 휴대폰 전자파 인증 등에 대한 미측 우려를 기술

□ 세 보고서는 전체 약 600쪽으로, 중국(53쪽), EU(39쪽), 일본(20쪽), 인도(16쪽)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, 우리 관련 부분은 14쪽으로 작년(17쪽)보다 다소 줄었음

□ 상기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 관련,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규범 및 국내정책에 입각하여 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

[첨부]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(요약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장희 서기관(☎ 02-2110-5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첨부] 2013년 미 무역장벽, 위생검역, 기술장벽 보고서 중 한국관련 내용

2013년 미 무역장벽보고서(NTE보고서) 한국관련 주요 내용

분야	주요 내용
수입정책	○ 한미 FTA로 미국 농산품의 2/3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기타 농산품도 관세할당(TQR)에 의거 무관세 대상으로 편입 ○ 쇠고기 관련,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, 양국 수출입 업자들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–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, 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접근 허용을 지속 촉구 예정 ○ 쌀 관련, 2005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및 2011년 최소시장접근(Minimum Market Access)에 따른 미국산 쌀의 對韓 수출 현황
정부조달	○ 한미 FTA 체결 이후 WTO 정부조달협정(GPA)에 포함된 기구보다 9개 추가된 50개의 중앙정부기구에 대한 조달 허용 ○ 공공부문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 알고리즘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AES(Advanced Encryption Standard)는 배제 – AES 사용 미국 생산자의 시장 접근 제한
산업보조금	○ 2009년 산업은행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경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분리 현황을 기술하고, 산업은행 국내외 상장 계획을 언급
지재권	○ 일반적으로 지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 ○ '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(ACTA)'의 체약국 중 하나이며, 한·미 FTA는 모든 종류의 지재권에 대한 선진적인 보호 조항, 주요 다자간 지재권 협정 가입 의무 및 단속 조항 등을 포함 ○ 국방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며, 미국측이 한국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이 합법적이고 인가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언급
서비스 장벽	○ 영화·방송·통신 관련, 지상파케이블·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,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, 외국 위성사업자의 한국 소비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금지 등 지적 ○ 한미 FTA 발효로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었으며,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법률전문가 고용 및 외국 로펌 한국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었으며, 향후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질 계획 ○ 보험과 금융 관련,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금융 관련 법규 사전고지 기간 연장 등으로 법규 투명성 개선 기대 – 또한 농협법 개정('11.3월)으로 농협생명 및 농협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가 출범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, 한·미 FTA 금융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 ○ 금융관련 정보의 해외이전 관련, 한국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, 한미 FTA 및 한-EU FTA에 따라 '13.7.1부터 특정 정보처리 업무의 국외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○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고, 미국은 이의 이행사항을 예의 주시중

투자 장벽		○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 장벽 제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, 과세 등 투자 관련 규제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 제기 ○ 한미 FTA 이행에 따라 현재 외국인 49% 투자제한이 있는 기간통신 규제가 철폐돼 2014년 3월부터 외국인 100% 소유 가능 – 다만, 지상파·케이블·위성사업자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, 외국 위성재송신 채널 지분 제한 등 유지 ○ 쌀·보리 경작, 육류 도매, 발전, 전기 유통 및 판매업,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 ○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, 무관세 수입, 노동조건 완화(장애인 의무고용 예외허용 등) 등 기업환경 개방 노력 긍정적 평가
반경쟁적 관행		○ 공정위가 경쟁을 증진하고,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며, 중소기업 경쟁환경을 마련하고,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폭넓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이행력을 갖게 된 것을 평가 ○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입법된 독점규제 및 공정무역법안이 2011년 11월 통과되면서 공정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합의 권한 부여
기타 장벽	규제개혁 및 투명성	○ 기존 행정절차법상 최소 입법예고기간은 20일에 불과했으나, 한·미 FTA 이행을 위한 법개정으로 동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연장
	자동차	○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미국 정부의 핵심 과제 –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하향조정 되거나 철폐됐으며(예: 승용차 8%→4%), 미국 안전기준 인정으로 관련 비관세 장벽 철폐 ○ 2011년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입법, 2012년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에 대한 우려 –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거치도록 촉구
	오토바이	○ 한국의 오토바이 소음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완화되었으나 오토바이 고속도로주행금지, 고세율, 오토바이 담보 융자금지 등 우려
	의약품 및 의료기기	○ 한미 FTA 조항에 따라 의약 및 의료 기기 기격 산정 및 상환에 대한 변동은 사전 고지하며, 한국 정부는 주요한 관련 규제 변경을 설명할 의무 있음 ○ 2012년 한국 보건복지부는 특허 만료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새 의약품 가격 인하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, 미국 정부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의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

2013년 미 위생검역보고서(SPS보고서) 한국관련 주요 내용

분야		주요 내용
생명공학		○ 2008년 제정된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(LMO법)과 관련한 우려 사항 기술 (※ LMO: Living Modified Organism) – ①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, ② 중복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위해성 평가, ③ "비의도적 혼입"에 대한 협소한 정의, ④ 동 법의 제한적 적용 범위 (유전자변형 식물에만 적용, 동물에는 비적용) – 2012년 말 한국 국회에서 LMO법이 개정되어 2013년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기존 우려 사항 반영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할 계획 ○ 농업분야 생명공학 제품 관련 검토절차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
식품안전	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	○ 2008년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한국시장 재개방에 뒤이어,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양국 수출입 업자들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○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, 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접근 허용을 지속 촉구 예정
	최대잔류량 제한	○ 한국은 농약의 '잔류최대허용치'(MRL*)를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며, 타국에서라도 미국 수입품의 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 재배, 운송, 수입업자 모두에게 규제 조치를 취함 ※ MRL : Maximum Residue Limits
	체리	○ 체리의 농약(메틸브로마이드) 훈증 대체 방식 도입으로 해상운송 및 유통기간 연장 추진 –한국 조사관을 미국에 파견해 체리의 재배과정을 확인하는 등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훈증 방법 협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

2013년 미 기술장벽보고서(TBT보고서) 한국관련 주요 내용

분야	주요 내용
양자 협의	○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으로 양자 회의를 통해 TBT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함 – 2012년 한미 양자통상회의를 통해 중복적인 전기안전심사 배제, 전자제품에 대한 최신 국제 기준 도입, 새로운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 제공 등 합의
화장품	○ 2012년 10ml 이상의 모든 화장품 포장지에 표기(labeling)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, 법안 통과 시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 및 부담 초래가 예상돼 미국 정부는 예의 주시 중
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	○ 2011월 2월 한국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REACH)을 국회에 상정 – 빠르면 2014년 적용될 동 법안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주시 중 ※ REACH: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
유기농제품 인증제	○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바, 미국은 동 법안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등성 협정 적용을 위한 협상 예정
정보기술 제품 전자 안전 규제	○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표준원 등과 정보통신기기의 안전기준 규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 중
태양광 패널 인증	○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(한국 태양광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) –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 한국은 새 인증 기준 마련 고려 중
자동차 부품 안전규제 및 인증	○ 2011년 한국 정부는 특정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에 대한 규제에 합의 도출 –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적 예정
핸드폰 특정 흡수율 표기	○ 2012년 한국은 휴대폰 전자파 등급을 2등급으로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 고시안을 공개 하였으나 미국은 동 등급 구분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, 두 등급 사이에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호도할 수 있다며 양자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